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실시요령

[시행 2016. 5. 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18호, 2016. 5. 30.,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054-429-41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술 품질 인증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 이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품질 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인증심사원’ 이라 함은 영 제7조 및 제6조에 따라 품질 인증 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청인’ 이라 함은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술 품질 인증을 받으려고 인증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기준’ 이라 함은 영 제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하는 「술 품질 인증 기준」을 말한다.

제3조(요령의 적용범위) 술 품질 인증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품질 인증 신청

제4조(품질 인증 신청 안내) 인증 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 요령, 수수료, 인증 기준 및 인증 절차 등을 안내한다.

제5조(품질 인증 신청서 접수 등) 인증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품질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 인증 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재한다. 이때 처리 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품질 인증 심사

제6조(품질 인증 심사) ① 인증 기관의 장은 품질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 제3항에 따라 문서·구술·전화·모사 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 일정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인증 심사원은 신청 서류 확인, 제조 방법 및 제조장 심사와 제품 심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 방법 및 제조장, 제품 등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 제4항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자로서 품질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품목에 속하는 다른 품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 제조 방법 및 제조장 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3. 제조 방법 및 제조장 심사와 제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품질 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 제조 방법 및 제조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③인증 심사원은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대상 품목에 속하는 다른 품명을 동시에 신청한 건이나, 같은 작업장에서 탁주(막걸리), 청주, 약주를 함께 생산하면서 동시에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제조 방법 및 제조장 심사 시 같은 세부 항목의 심사는 생략하고, 다른 심사 항목만 심사할 수 있다.

④인증 심사원은 각 단계별 심사 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⑤인증 심사원은 원료 양곡에 대한 품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련 업무 공무원에게 원료 양곡의 품위 확인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품질 인증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⑦제6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판정은 인증 기준의 판정 기준(이하 '판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⑧인증 심사원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심사표 등)에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⑨인증 심사원은 품질 인증을 신청한 품목의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을 조사한 결과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8항 보고 시 함께 보고한다.

제7조(심사 결과 판정 및 통보) ① 인증 기관의 장은 인증 심사원 자격을 갖추며 인증 심사 경력이 2년 이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이상의 심의관을 정하여 판정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거나,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증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 제3항의 별지 제8호 서식의 '품질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7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③인증 기관의 장은 품질 인증을 신청한 품목의 심사 결과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국내산 농산물을 100%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2항에 따른 품질 인증서 발급 시「술 품질 인증 표지 및 표시 방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제3호 나목에 따라 '나' 형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④인증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심사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다른 인증 심사원이 해당 단계에 대하여 추가 보완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의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재심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 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 기관의 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품질 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신청인에게 인증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 인증 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 기관의 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품질 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술 품질 인증 표지 및 표시 방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 법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제26조(품질 인증의 사후 관리), 제28조(표시 변경 등의 명령) 등 술 품질 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거나 알고 있어야 할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인증 번호는 인증 기관 기호(가, 나 등)와 인증 기관별 품질 인증 누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